##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[시행 2022.01.01] (일부개정) 2021.09.17 조례 제2675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주민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380-330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6·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(이하"참전유공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·애족정신 함양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11.18., 2016.10.1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6·25전쟁"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.<개정 2016.10.10.>
- 2. "참전유공자"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한 자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<개정 2016.10.10.>
- 가. 6-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- 나. 「병역법」또는「군 인사법」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 인
- 다. 6.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라. 6·25전쟁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
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

**제3조(지원대상자)**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. < 개정 2010.11.18, 2011.11.21, 2016.10.10.>

- 1. 삭제 <2010.11.18.>
- 2. 삭제 <2010.11.18.>

**제4조(지원사업)** 군수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21., 2021.9.17.

- 1.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(이하 "참전명예수당"이라 한다) 월 8만원 지급 <개정 2013.10.1, 2016.10.10, 2018.8.3., 2021.9.17.>
- 2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<개정 2013.10.1>, <2016.10.10.>
- 3.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개정 2021.9.17.>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)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고,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11.11.21>
-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<개정 2016.10.10.>
-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따르되,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, 재산상속인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수 있다.<개정 2016.10.10.>

**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** ① 군수는 매년 1월중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에 다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1>

② 군수는 지급대상자 결정 시 지방보훈청장에게 참전유공자 여부를 의뢰·확인할 수 있다.<개정 2016.10.10.>

**제7조(지급의 중지)**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1.18.>, <개정 2016.10.10.>

**제8조(환수조치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11.18.>, <개정 2016.10.10.>
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참전명예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<개정 2016.10.10.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09.6.15 조1913>

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71호, 2010.11.18.>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7호, 2011.11.21.>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01호, 2013.10.1.>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87호, 2016.10.10.>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346호, 2017.7.1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24호, 2018.8.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1.9.17. 조례 제2675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